

도급대금채무 소멸시 도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있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

1. 사실 관계

도급인 Y는 A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A사는 X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를 X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공사 도중 A사가 부도를 내자 Y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A사의 부도로 X사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X사는 Y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사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금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며 X사의 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2. 해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선금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선금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금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그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선금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공사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금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금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

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또한 본건과 같이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당면 충당됨으로써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된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도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판결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도급관계의 주류에서 배제된 하수급인으로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에 따라 직접지급을 받을 여지가 매우 축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부도 등 비정상적인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 해지 및 공사대금 미지급내역 등을 파악하여 정산대상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2014.4.9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윤 변호사

TEL. 02 316 4205

E-Mail. jyyun@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